

2026년 제4호 **상반기 특집호**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텍스트마이닝 분석】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

LDA 토픽모델링

【판정사례 분석】

품목분류 분야

차량용 그릴 셔터

디스플레이 사인

웨어러블 센서 기기

스프레이 실드

철강제 수거함

스마트폰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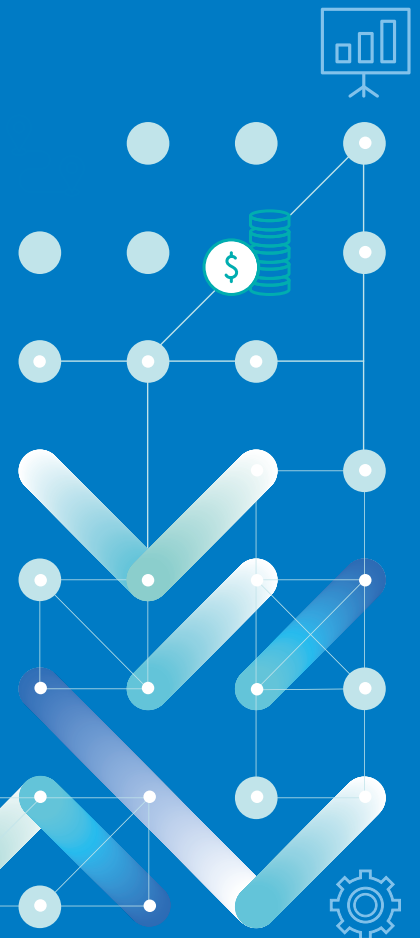
에어컨 피팅

대체육

원산지 분야

니켈 합금 와이어

튜브 조립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1. 리포트 개요

2. 텍스트마이닝 분석

3. 판정사례 분석

3-1. 차량용 그릴 셔터

3-2. 디스플레이 사인

3-3. 웨어러블 센서 기기

3-4. 스프레이 실드

3-5. 철강제 수거함

3-6. 스마트폰 케이스

3-7. 에어컨 피팅

3-8. 대체육

3-9. 니켈 합금 와이어

3-10. 튜브 조립체





01. 리포트 개요

(1) 목적

- 본 리포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 판정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미 수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적용 세율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발행 주기

- 정기호: 매월 발행
- 특별호: 반기별(6월·12월) 발행

(3) 리포트 범위

- 정기호: 미국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해설
- 특별호: 정기호 내용에 더하여, CBP 판정문 대상 주요 키워드·토픽 분석(토픽모델링 기반)을 추가로 수행
- 카드 뉴스: 정기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구성한 슬라이드 형식 자료(별도 제공)

리포트 정기호

리포트 특별호

카드 뉴스





02. 텍스트마이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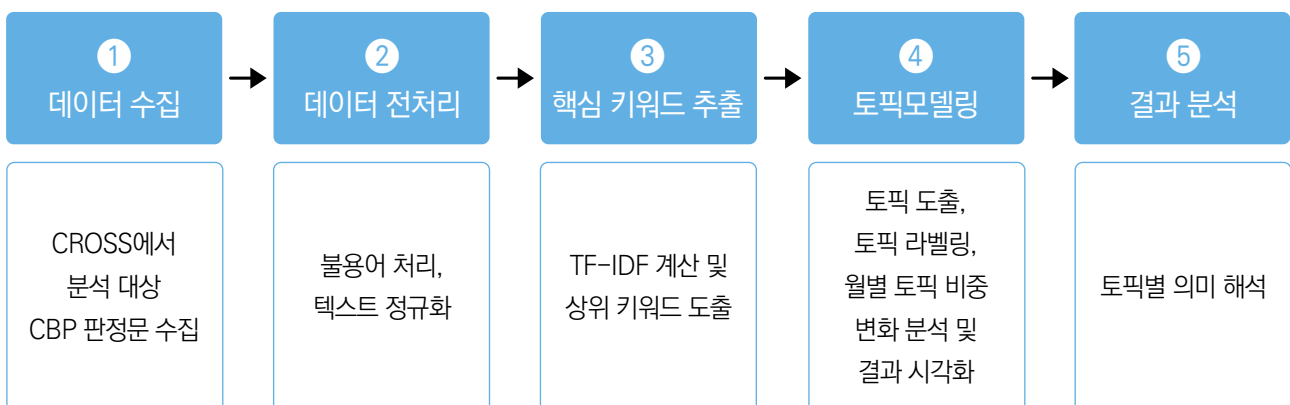
(1) 개요

- 분석 목적: 본 분석을 통해 미국 CBP 판정문에 내재된 핵심 토픽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판정 동향과 주요 특징을 파악함.
- 분석 대상: 2026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개된 CBP 판정문 총 1,105건(품목분류 778건, 원산지 327건)
- 자료 출처: CBP 판정문 검색 시스템(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2)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

- 수집된 CBP 판정문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TF-IDF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문서에 내재된 핵심 주제와 토픽 비중의 변화를 분석함.
-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대규모 문서에 포함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와 패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
-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특정 단어의 문서 내 출현 빈도(TF)와 전체 문서 집합에서의 희소성(IDF)을 결합하여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기법
-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문서를 여러 잠재 주제가 혼합된 형태로 가정하고, 각 단어가 특정 주제에서 생성될 확률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문서의 주제 분포와 주제별 핵심 단어를 도출하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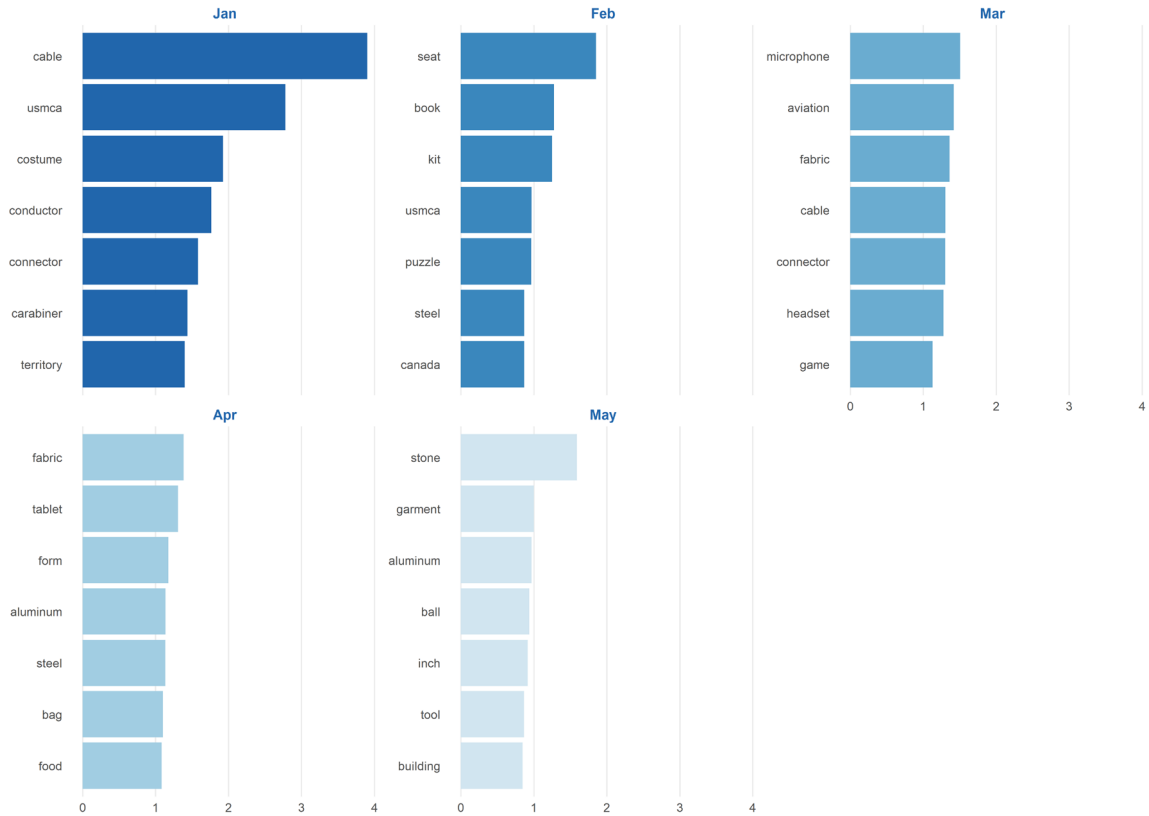
(3) 분석 절차



(4) 분석 결과(품목분류 분야)

1)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

〈그림 1〉 월별 TF-IDF 상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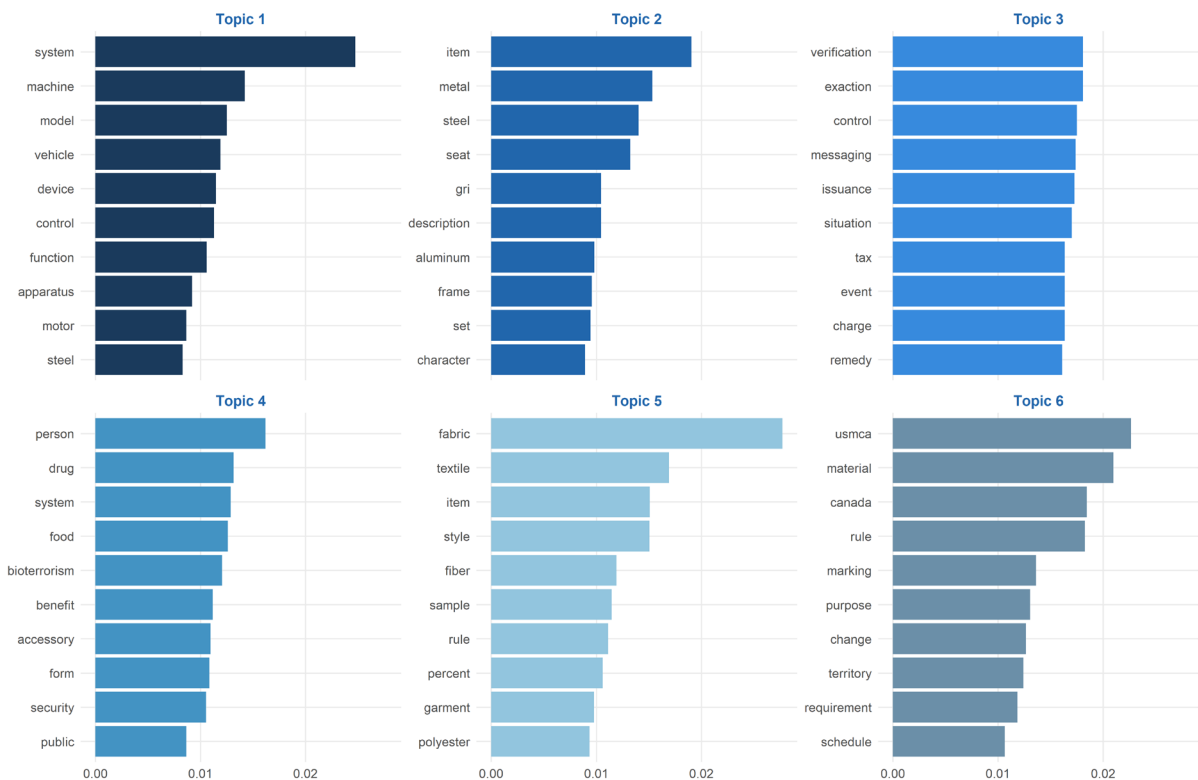


월	상위 단어
1월	cable(케이블),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costume(의상), conductor(전도체), connector(커넥터), carabiner(카라비너), territory(영역)
2월	seat(좌석), book(책), kit(키트),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puzzle(퍼즐), steel(철강), canada(캐나다)
3월	microphone(마이크), aviation(항공), fabric(천), cable(케이블), connector(커넥터), headset(헤드폰), game(게임)
4월	fabric(천), tablet(태블릿), form(형식), aluminum(알루미늄), steel(철강), bag(가방), food(식품)
5월	stone(돌), garment(의복), aluminum(알루미늄), ball(볼), inch(인치), tool(도구), building(건물)

- TF-IDF 분석 결과,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상위 키워드 가운데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케이블, 커넥터,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철강, 알루미늄, 천으로 나타남.
- 상위 키워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케이블·커넥터·전도체 등 전기 부품류, 마이크·헤드폰 등 전자 제품류, 의상·천·가방·의복 등 의류·액세서리류,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소재류의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됨.
-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산업재뿐만 아니라 의상·책·퍼즐·가방·볼 등 일반 소비재도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품목분류 심사가 산업재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역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키워드로 USMCA는 1월과 2월에 연속하여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품목분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단을 함께 다룬 판정문이 해당 시기에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2) LDA 토픽모델링

〈그림 2〉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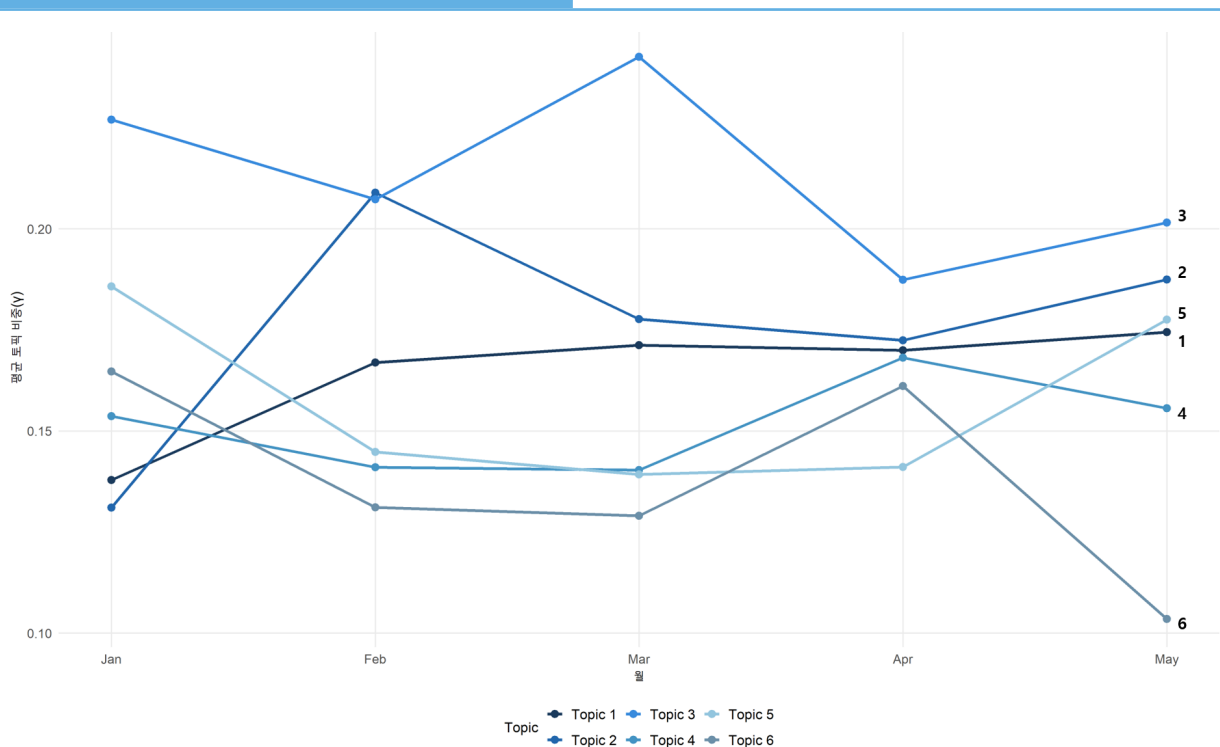
토픽	토픽별 상위 단어	토픽 주제
Topic 1	system(시스템), machine(기계), model(모델), vehicle(차량), device(기기), control(통제), function(기능), apparatus(장치), motor(모터), steel(철강)	차량 및 기계장치
Topic 2	item(물품), metal(금속), steel(철강), seat(좌석), description(설명), GRI(통칙), aluminum(알루미늄), frame(프레임), set(세트), character(특징)	금속제품·복합물품
Topic 3	verification(검증), exaction(징수), control(통제), messaging(전송), issuance(발행), situation(상황), charge(청구), event(사건), tax(세금), remedy(해결책)	관세행정 절차·집행
Topic 4	person(사람), drug(약물), system(시스템), food(식품), bioterrorism(생물학적 테러 행위), benefit(혜택), accessory(부속품), form(형식), security(안보), public(대중)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
Topic 5	fabric(천), textile(직물), item(물품), style(스타일), fiber(섬유), sample(견본), rule(규칙), percent(백분율), garment(의복), polyester(폴리에스테르)	섬유·의류 제품
Topic 6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material(소재), canada(캐나다), rule(규칙), marking(표시), purpose(목적), change(변화), territory(영역), requirement(요건), schedule(일정)	USMCA 원산지 규정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품목분류 분야 CBP 판정문 778건에서는 차량 및 기계장치(Topic 1), 금속제품·복합물품(Topic 2), 관세행정 절차·집행(Topic 3),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Topic 4), 섬유·의류 제품(Topic 5), USMCA 원산지 규정(Topic 6)의 6개 토픽이 도출됨.
- 주요 토픽을 HS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차량(제17부) 및 기계류(제16부)는 Topic 1, 식품(제1부~제4부) 및 의약품(제6부)은 Topic 4, 섬유·의류 제품(제11부)은 Topic 5와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품목 구분이 판정 사례에서도 독립적인 주제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금속제품·복합물품에 해당하는 Topic 2에서는 금속,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GRI(통칙), character(특징) 등의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복합재료 또는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칙 제3호 나목(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결과로 해석됨.

-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에 해당하는 Topic 4에서는 약물, 식품, 생물학적 테러 행위, 안보 등이 주요 단어로 함께 도출되었으며, 이는 의약품·식품 등 규제 대상 품목의 품목분류 판정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규제가 함께 검토된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USMCA 원산지 규정(Topic 6) 역시 하나의 독립적인 토픽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품목분류 판정과 함께 특혜원산지 판단이 병행된 판정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일부 판정 사례에서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이 동시에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함.

3) 토픽 트렌드 분석

〈그림 3〉 월별 토픽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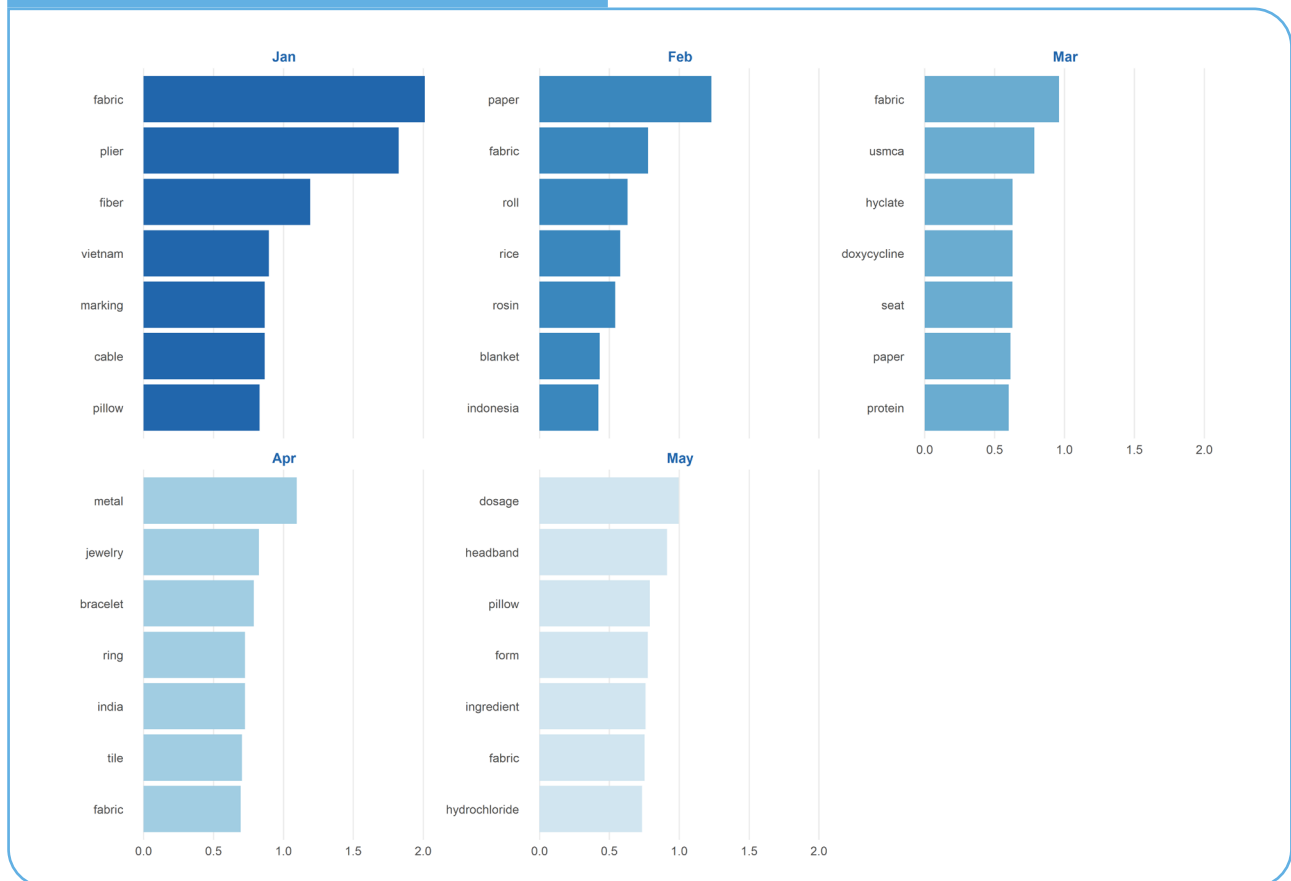
- 월별 토픽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Topic 3(관세행정 절차·집행)는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3월에 최고 비중을 기록한 이후 4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에 다시 소폭 증가하며 전체 토픽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음.
- Topic 1(차량 및 기계장치)은 1월에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낸 이후 분석 기간 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Topic 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함. 이는 차량 및 기계류 관련 품목분류 판정 사례의 비중이 분석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Topic 5(섬유·의류 제품)는 1월 이후 2·3월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4·5월에 다시 증가하는 U자형 추세를 나타냄.
- Topic 4(식품·의약품 안전 규제)는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함.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식품·의약품 관련 품목분류 판정 사례가 분석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줌.
- 한편 Topic 6(USMCA 원산지 규정)은 분석 기간 대부분의 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이 동시에 요청된 사례가 일부 존재하나 전체 판정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토픽에 비해 높지 않음을 시사함.

(5) 분석 결과(원산지 분야)

1)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

〈그림 4〉 월별 TF-IDF 상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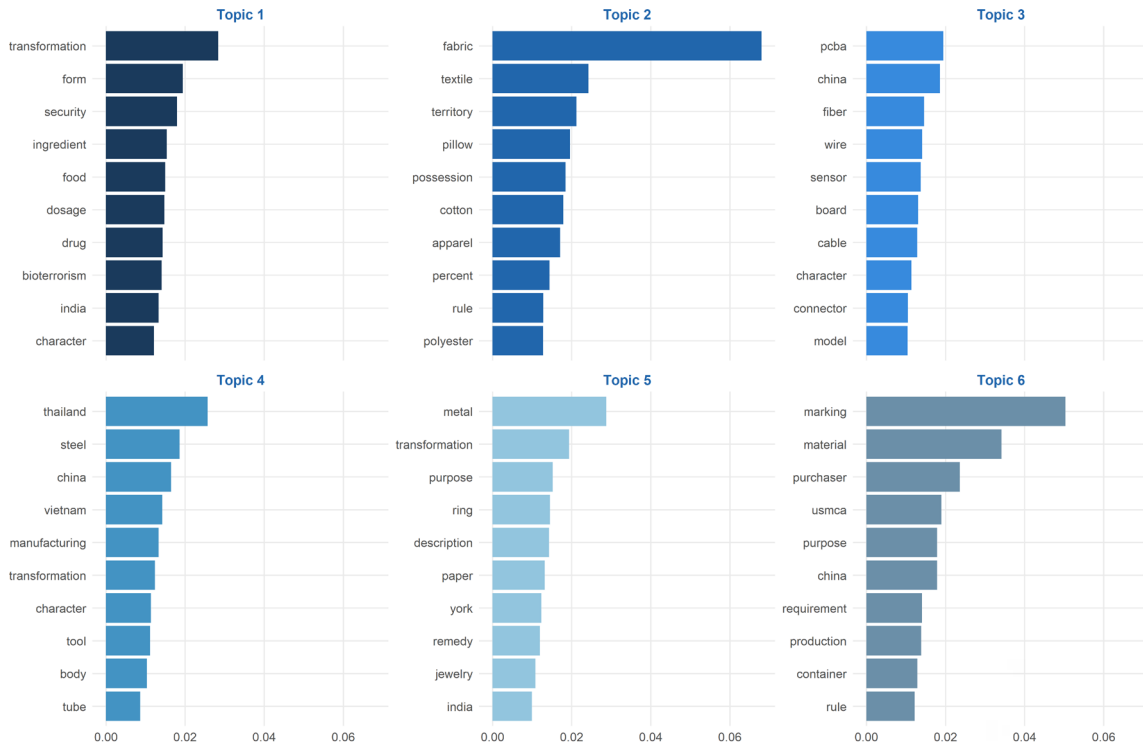
월	상위 단어
1월	fabric(천), plier(집게), fiber(섬유), vietnam(베트남), marking(표시), cable(케이블), pillow(베개)
2월	paper(종이), fabric(천), roll(롤), rice(쌀), rosin(송진), blanket(담요), indonesia(인도네시아)
3월	fabric(천),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hyclate(하이클레이트), doxycycline(독시사이클린), seat(좌석), paper(종이), protein(단백질)
4월	metal(금속), jewelry(보석), bracelet(팔찌), ring(반지), india(인도), tile(타일), fabric(천)
5월	dosage(복용량), headband(머리띠), pillow(베개), form(형식), ingredient(재료), fabric(천), hydrochloride(염산염)

- TF-IDF 분석 결과,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상위 키워드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fabric(천)으로,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매월 상위 키워드에 포함됨.
- 상위 키워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천·섬유·베개·담요 등 섬유류, 하이클레이트·독시사이클린·복용량·염산염 등 의약품류, 보석·팔찌·반지·금속 등 귀금속류의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됨.
- 국가명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베트남(1월), 인도네시아(2월), 인도(4월)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됨.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월별로 상이한 국가가 등장하는 분산된 양상을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도출된 국가명은 모두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USMCA가 3월에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한·미 FTA 관련 키워드는 분석 기간 동안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음.



2) LDA 토픽모델링

〈그림 5〉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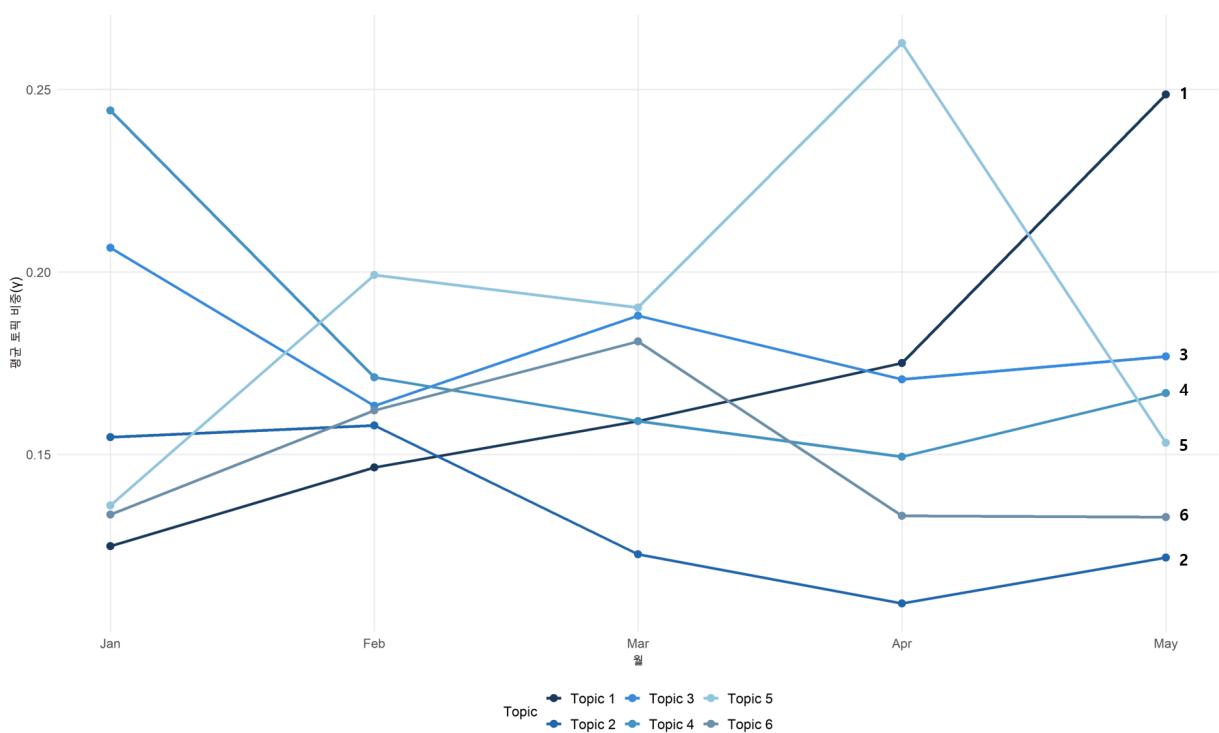
토픽	토픽별 상위 단어	토픽 주제
Topic 1	transformation(변형), form(형식), security(안보), ingredient(재료), food(식품), dosage(복용량), drug(약물), bioterrorism(생물학적 테러 행위), india(인도), character(특징)	의약품·식품
Topic 2	fabric(천), textile(직물), territory(영역), pillow(베개), possession(소지), cotton(면직물), apparel(의류), percent(백분율), rule(규칙), polyester(폴리에스테르)	섬유·의류
Topic 3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체), china(중국), fiber(섬유), wire(선), sensor(센서), board(보드), cable(케이블), character(특징), connector(커넥터), model(모델)	전자부품

Topic 4	thailand(태국), steel(철강), china(중국), vietnam(베트남), manufacturing(제조), transformation(변형), character(특징), tool(도구), body(몸체), tube(관)	금속제품
Topic 5	metal(금속), transformation(변형), purpose(목적), ring(반지), description(설명), paper(종이), york(요크), remedy(해결책), jewelry(보석), india(인도)	귀금속 제품
Topic 6	marking(표시), material(소재), purchaser(구매자),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china(중국), purpose(목적), requirement(요건), production(생산), container(용기), rule(규칙)	원산지 표시·USMCA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원산지 분야 CBP 판정문 327건에서 의약품·식품(Topic 1), 섬유·의류(Topic 2), 전자부품(Topic 3), 금속제품(Topic 4), 귀금속 제품(Topic 5), 원산지 표시·USMCA (Topic 6)의 6개 토픽이 도출됨.
- 원산지 표시·USMCA에 해당하는 Topic 6을 제외한 나머지 토픽은 품목군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는 원산지 판정 사례가 품목군을 중심으로 주제별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냄.
- 원산지 판정의 주요 기준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과 관련된 키워드는 Topic 1, 4, 5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해당 토픽에서는 transformation(변형)과 character(특징)가 상위 단어로 도출되어, 실질적 변형 원칙이 적용된 원산지 판정 사례가 해당 토픽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금속제품에 해당하는 Topic 4에서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명이 상위 단어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금속제품의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다룬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음을 시사함.
- 한편 중국은 Topic 3(전자부품), Topic 4(금속제품), Topic 6(원산지 표시·USMCA)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단어로 도출되어, 가장 많은 토픽에 걸쳐 확인된 국가 키워드로 나타남. 이는 토픽에 관계없이 중국과 관련된 제조공정 또는 소재 투입 여부가 원산지 판정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
-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USMCA에 해당하는 Topic 6에서는 marking(표시), requirement(요건), rule(규칙) 등이 주요 단어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원산지 표시 의무와 USMCA 원산지 규정의 충족 여부가 함께 검토된 판정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음을 보여줌.

3) 토픽 트렌드 분석

〈그림 6〉 월별 토픽 비중 변화



- 월별 토픽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Topic 1(의약품·식품)은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5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의약품·식품 관련 원산지 판정 사례의 비중이 분석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Topic 5(귀금속 제품)는 분석 기간 중 월별 변동 폭이 가장 큰 토픽으로 나타남. 3월에서 4월 사이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5월에는 다시 크게 감소함. 이는 귀금속 제품 관련 원산지 판정 사례가 월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음을 시사함.
- Topic 4(금속제품)는 1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5월에는 Topic 1과 Topic 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함.
- Topic 3(전자부품)과 Topic 6(원산지 표시·USMCA)은 분석 기간 동안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함.



03. 판정사례 분석

(1) 분석 대상

- 2026년 5월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전심사 사례 중,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야 판정문 10건을 리포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번호	분야	품명	판정번호
1	품목분류	차량용 그릴 셔터(Active grille shutter)	N360522
2		디스플레이 사인(Display signs)	N360783
3		웨어러블 센서 기기(Wearable sensor device)	N360915
4		스프레이 실드(Spray shield)	N361493
5		철강제 수거함(Steel receptacle)	N361235
6		스마트폰 케이스(Smartphone case)	N360978
7		에어컨 피팅(Air conditioning fittings)	N361284
8		대체육(Imitation meat products)	N361152
9	원산지	니켈 합금(니켈-티타늄) 와이어(Nickel-titanium wire)	N360963
10		튜브 조립체(Tube assembly)	N361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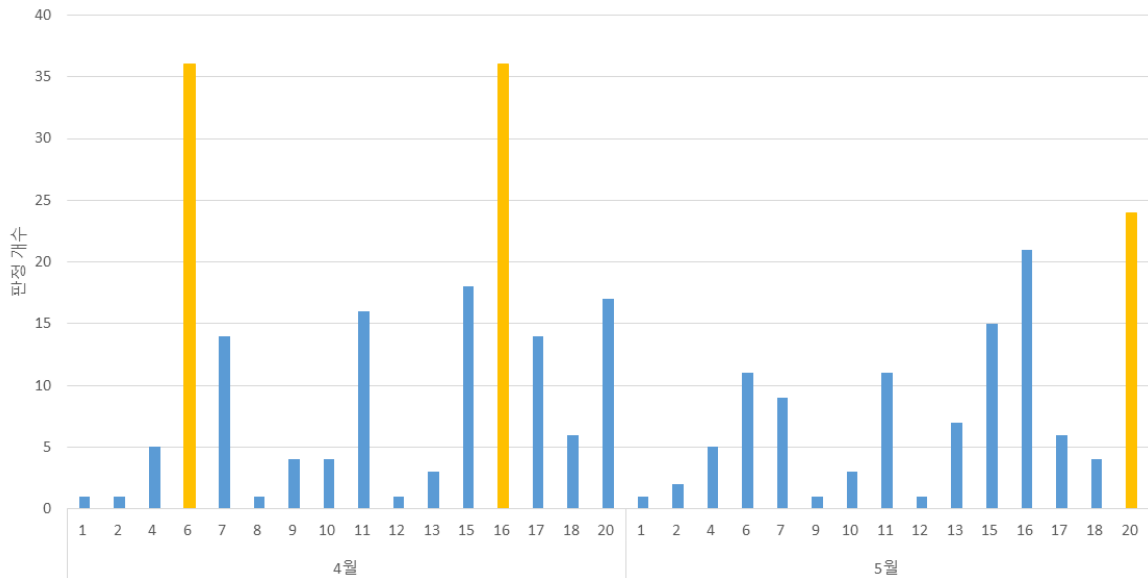
(2) 분야별 판정 현황

- CBP의 분야별 판정 건수(6월 16일 조회일 기준)는 4월 대비 5월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체 판정 건수는 품목분류 분야가 원산지 분야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월 품목분류 판정 181건 | 원산지 판정 69건
 - 5월 품목분류 판정 124건 | 원산지 판정 54건

(3) 품목별(HS 부 기준) 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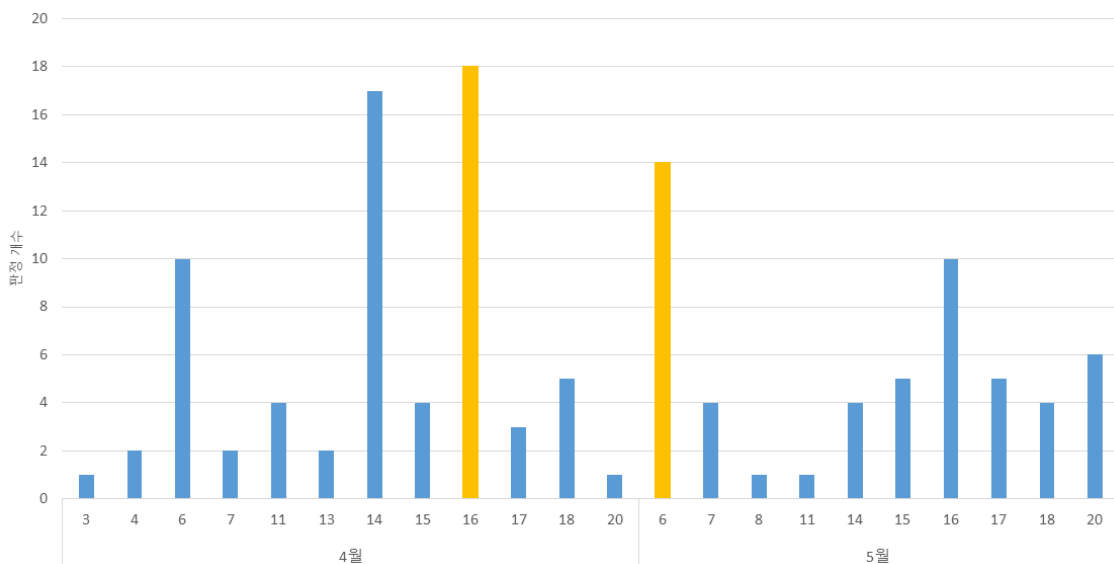
- 품목분류 분야 : 5월 CBP 품목분류 판정 사례 분석 결과, 잡품(제20부), 기계류(제16부), 그리고 비금속 제품(제15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4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 5월 제20부(잡품),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그림 1〉 2026년 4~5월 품목별 품목분류 판정 건수



- 원산지 분야 : 5월 CBP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결과, 화학공업생산물(제6부), 기계류·전기기기(제16부) 그리고 잡품(제20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4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4부(진주·귀석·귀금속),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 5월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20부(잡품)

〈그림 2〉 2026년 4~5월 품목별 원산지 판정 건수



(1) 품목정보

품 명	차량용 그릴 셔터(Active grille shutter)
판정번호	NY N360522
판정일자	2026-05-05
신청국가	미국
HTSUS	8481.80.9025
제품설명	• 대상물품: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뒷면에 장착하는 자동 개폐식 그릴 셔터 • 구조: 프레임, 셔터 블레이드, 구동장치(모터), 공기 디플렉터 및 연결기구로 구성 • 작동방식: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별도 기기)가 엔진 온도·속도·부하 상태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셔터 동작을 자동으로 조정 ① 고온 환경 또는 견인 작업 등 고부하 상황: 셔터를 개방하여 엔진룸으로의 공기 유입량 확대 ② 고속 주행 시: 셔터를 닫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 저항 최소화

(2) 쟁점사항

- 자동 개폐 방식의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셔터를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 제8481호: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3) 관련 규정

1) 제8708호 해설

-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문과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fender)]·진흙받이; 대시보드(dashboard); 라디에이터 덮개;

2)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4) 분석 및 판정

1)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차량 전면부의 그릴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는 셔터로,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 개폐되어 라디에이터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셔터의 움직임은 쟁점물품과 별도로 구성된 전자제어장치(ECU)에 의해 제어된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8708호 분류를 주장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관련 소호로는 제8708.29호(차체의 부분품), 제8708.91호(라디에이터와 그 부분품) 및 제8708.99호(그 밖의 자동차 부분품)가 있다.
- 신청인은 유사사례로 라디에이터 방충망에 관한 판정(NY 850403)을 제시하였다. 해당 물품은 철강제 스크린·폴리에스터 직물·고정용 아일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럭 트랙터의 라디에이터 전면에 장착되어 곤충 및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한다. CBP는 해당 물품을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호로 분류하였다.
- 또한 신청인은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냉·온풍의 흐름과 방향을 조절하는 물품에 관한 판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물품은 운전자 또는 승객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CBP는 이를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호에 분류하였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이 신청인이 제시한 사례의 물품들과 구조 및 기능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사사례의 라디에이터 방충망은 기계적 요소(mechanical features)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순히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두 번째 사례의 물품 역시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조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폐쇄한 상태로 두면 더 이상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반면, 쟁점물품은 모터 구동에 의해 셔터가 자동으로 개폐되며 공기 유입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사례의 물품들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을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제8481호(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과 기능 및 작동 원리가 유사한 물품으로 댐퍼 도어에 관한 판정사례(NY F80523)를 검토하였다. 해당 물품은 하우징에 조립된 상태에서 서보 모터에 의해 작동하며,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BP는 댐퍼 도어의 작동 방식이 밸브와 유사하다고 보아 해당 물품을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로 분류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 역시 댐퍼 도어와 동일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물품은 모터 구동으로 셔터를 개폐하여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며, CBP는 이러한 작동 방식이 유체인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 한편, 제17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제848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분류 규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특정 차량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더라도, 제8708호보다 제8481호가 우선 적용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을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보아 제8481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차량 전면에서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릴 셔터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 쟁점물품은 엔진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성능에 기여하는 차량 전용 부분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호가 아닌 제8481호(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제시한 유사사례의 물품들이 차체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에 분류된 것과 대비된다.
- CBP는 쟁점물품이 모터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면서 공기 유입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계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유사사례의 물품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CBP는 쟁점물품의 공기 흐름 제어 기능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와 동일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아 제8481호로 분류하였다.

- 본 사례는 차량 전용 부품이라 하더라도 제84류에 특정된 기계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제8708호가 아닌 제84류의 해당 호에 우선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와 관련하여 제17부 주 제2호는 제84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차량 부품품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차량용 부품의 품목분류 시에는 해당 물품의 기능적 특성이 제84류 기계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디스플레이 사인(Display signs)
판정번호	NY N360783
판정일자	2026-05-12
신청국가	캐나다
HTSUS	4911.10.0080; 9610.00.0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제품 설명 및 홍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용 사인 • 제품유형: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 및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 ①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wall display sign) - 벽면에 고정하여 전시하는 사인 - 두께 ½인치의 합판으로 제작 - 36×28인치, 23×84인치 등 다양한 규격으로 재단 - 프라이머 페인트가 도포된 표면에 제품명, 홍보 문구 등을 손으로 직접 기재 - 문구가 이미 기재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입 후 미국 내 사용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 상태로 수입 ②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product display sign) - 제품 주변에 전시하는 사인(케이스 내부에 삽입하거나 제품 진열장에 전시) -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 사인 전면에 품명·사용법·가격 등의 정보를 철판 스타일의 서체로 디지털 인쇄

(2) 쟁점사항

- 소매점에서 상품 정보 및 홍보용 문구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시용 사인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610호: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제4911호: 그 밖의 인쇄물

(3) 관련 규정

1) 제9610호 해설

- 이 호에는 석필이나 초크를 가지고 필기하거나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된 석판과 보드를

분류한다(예: 학생용의 석판·흑판과 어떤 종류의 게시판).

- 이러한 물품은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슬레이트[응결된 슬레이트를 포함한다]로 제작되었거나, 분말상 슬레이트의 조제품이나 플라스틱 시팅(sheeting)이나 그 위에 필기하기에 적합한 그 밖의 재료를 한 면이나 양면에 도포한 여러 가지 재료(목재·판지·방직용 섬유재료·석면시멘트 등)로 만들어진다.

2) 제49류 해설

-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에 사용하는 도자제, 유리·비금속으로 된 문자, 숫자, 사인판과 이와 유사한 모티브(motif)로 인쇄한 서화나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6914호, 제7020호와 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는 제9405호에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610호(보드)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소매점에서 제품 정보 및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는 전시용 사인으로,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과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은 전시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은 소매점 벽면에 고정하는 방식인 반면,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은 제품 포장 내에 삽입하거나 제품 주변에 전시하는 방식이다.
- 또한 두 유형은 정보 기재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은 제품 정보가 미리 인쇄된 상태로 수입되는 반면,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은 문구가 기재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입 후 사용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 상태로 수입될 수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필기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96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9610호 해설에서는 한쪽 면 또는 양면에 필기에 적합한 재질의 표면을 갖추고, 연필·분필·펜 등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을 예시하고 있다.
- CBP는 제96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사용자가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필기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입 시점에 이미 정보가 인쇄되거나 내용이 기재되어 추가적인 필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물품은 제9610호의 필기용 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CBP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제품명·홍보 문구 등이 인쇄·기재된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과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은 제96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수입 후 소매점에서 내용을 직접 기재할 예정인 공란 상태의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은 필기 가능한 빈 표면이 존재하므로 제961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제4911호(인쇄물)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제9610호에서 제외된 물품(정보가 인쇄·기재된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과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이 제4911호의 인쇄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 제49류 해설에 따르면 이 류에는 그림·문자 등의 인쇄에 의해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과 용도가 결정되는 각종 인쇄물이 포함된다. 쟁점물품인 디스플레이 사인은 제품 정보, 홍보 문구 및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시물로, 기재된 내용이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CBP는 이미 정보가 인쇄·기재된 상태로 수입되는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과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을 제4911호의 인쇄물로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사인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었다.
- CBP는 수입 시점에 물품 표면에 필기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공란 상태의 사인은 제9610호(필기용 보드)로, 제품명·홍보 문구 등이 인쇄·기재된 사인은 제4911호(인쇄물)로 각각 분류하였다.
-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수입 후 필기 등 추가 작업을 거쳐 사용되는 물품은 수입 시점의 상태와 최종 사용 시점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며, 이때 품목분류는 수입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웨어러블 센서 기기(Wearable sensor device)
판정번호	NY N360915
판정일자	2026-05-12
신청국가	미국
HTSUS	9031.80.8085
제품설명	• 대상물품: 손목 착용형 헬스케어 밴드 • 기능: 생체 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 충전방식: USB-C 커넥터를 통해 기기를 충전하며, LED 표시등으로 충전 상태 확인 • 구성요소 ① 센서: 가속도계, 피부 온도센서, 주변 온도센서, 광혈류 측정센서 ② 블루투스 송수신기 ③ 플라스틱 하우징 ④ 실리콘 또는 나일론 스트랩
참고 사진	 *사진 출처: NaturalCycles USA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생체 지표를 측정하는 센서와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헬스케어 밴드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517호: 데이터 송신용·수신용 기기
 - 제9031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3) 관련 규정

1) 제16부 주1

-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

2) 제16부 주3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3) 제16부 해설 (VI)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부의 주 제3호)

-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4) 제90류 주3

-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517호(데이터 송수신 기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손목에 착용하는 헬스케어 밴드로, 사용자의 생체 지표를 측정하는 각종 센서와 측정된 데이터를 외부 기기와 송수신하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기기가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자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이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를 이용한 생체 정보 측정 기능도 수행하므로 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복합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6부 주3 및 제90류 주3에 따르면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CBP는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체온·맥박·혈류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측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은 측정된 정보를 외부 기기와 연동하거나 전송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제16부 주1은 제90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17호 해설에서도 디지털 원격 측정기기(Digital telemetering instruments)는 제90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여 동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복합기기로서 그 주된 기능이 건강 지표의 측정에 있으므로, 제85류에서 제외되는 제90류의 측정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측정기기 품목분류 판단

- 제90류는 다양한 측정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온도 측정기기는 제9025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그 밖의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제9026호에, 열·소리·빛의 측정용 기기는 제9027호에 각각 분류되며, 다른 호에 특정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된다.
- CBP는 쟁점물품에 탑재된 각종 센서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심박수 측정 기능은 제9029호에, 체온 측정 기능은 제9025호에, 가속도계 기능은 제9031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각 센서의 기능이 모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어느 하나가 다른 기능보다 주된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등하게 분류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번호의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CBP는 각 센서의 기능에 따른 품목번호 중 마지막에 위치한 제9031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생체 지표 측정 기능과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함께 갖춘 손목 밴드형 헬스케어 기기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워치와 외형이 유사하나 통화·메시지 작성 등의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CBP는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생체 지표의 측정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측정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 센서들 간에 어느 하나를 주된 기능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적용 가능한 호(센서 관련 품목번호)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제9031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 쟁점물품과 같이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 기기는 탑재된 기능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일관된 품목분류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 구성을 가진 기기에 대한 선행 품목분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품목정보

품 명	스프레이 실드(Spray shield)
판정번호	NY N361493
판정일자	2026-05-21
신청국가	미국
HTSUS	7616.99.5190
제품설명	• 용도: 스프레이 페인트가 원하지 않는 부위로 튀거나 과도하게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리개 형태의 작업 도구 • 구조: 가로 36인치, 세로 9인치의 직사각형 실드와 길이 18인치의 원통형 손잡이로 구성 • 주재질: 알루미늄

(2) 쟁점사항

- 스프레이 페인트 작업 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페인트가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프레이 실드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205호: 수공구
 - 제7616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3) 관련 규정

1) 제82류 주1

-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가. 비금속
 -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 라. 연마재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흙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 통칙 제3호 (나) 해설 (VIII)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205호(수공구)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스프레이 페인트 작업 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페인트가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지식 도구로, 직사각형 형태의 실드와 원통형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페인트 작업용 수공구에 해당하므로 제82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82류 주1에 따르면 제8205호의 공구류는 비금속·금속탄화물·서멧 등 특정 재료의 작용면(working surface)을 갖춘 공구에 한정된다. 이에 CBP는 쟁점물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의 실드가 페인트 도포 대상이 아닌 부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될 뿐, 작업 대상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82류 주1에서 규정하는 작용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Gehrig, Hoban & Co., Inc. v. United States*, 65 Cust. Ct. 80, 82 (1970) 사건에서 수공구의 작업부를 "외부 물체에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정의한 것과도 부합한다. 또한 다른 유사사례(HQ 966118)에서도 수공구를 맨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끌·대패·톱과 같은 도구로 설명하고 있어, CBP는 쟁점물품이 이러한 수공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제82류에서 규정하는 작용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8205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제7616호(알루미늄 제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이 제8205호의 수공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CBP는 쟁점물품의 주재질인 알루미늄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제76류에는 각종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되며, 동 류의 마지막 호인 제7616호는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을 포괄한다. CBP는 쟁점물품이 제7616호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7616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페인트 작업용 스프레이 실드가 제82류의 수공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물품은 페인트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분사되는 것을 막는 가리개 역할을 하나, 실드가 작업 대상에 직접 작용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제82류의 수공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 제82류 주1에 따라 수공구는 원칙적으로 특정 재질의 작용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블로램프·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세트·공구용 판·봉·팁(서멧으로 만든 것)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예외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82류의 수공구로 분류할 수 없다.
- 쟁점물품의 실드가 페인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작업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CBP는 이를 작업 대상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지 않았다.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검토 시에는 수공구의 작용면에 관한 이러한 판단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철강제 수거함(Steel receptacle)
판정번호	NY N361235
판정일자	2026-05-20
신청국가	미국
HTSUS	7326.90.8688
제품설명	• 대상물품: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선별된 불량품 또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 • 형태: 길이 570mm, 높이 431mm, 너비 369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 구조: 하단부에는 기계에 장착하기 위한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불량품을 용기 내부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투입구 존재 • 주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2) 쟁점사항

- 컨베이어 라인의 불량품 배출 장치가 선별한 불량품을 수거하는 철강제 용기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7326호: 그 밖의 철강제품
 - 제8486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3) 관련 규정

1) 제8479호 해설

-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2) 제16부 해설

○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

-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3) 제7326호 해설

- 이 호에는 단조·편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479호(그 밖의 기계류 및 부분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제조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라인에 장착되는 직사각형 용기 형태의 물품으로, 불량품 배출 장치가 선별한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단부에는 컨베이어 라인에 부착하기 위한 홈이 있으며, 상부에는 불량품을 내부로 투입하기 위한 투입구가 마련되어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불량품 배출 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호의 부분품 소호인 제847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6부 해설에서는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이 불량품 배출 장치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쟁점물품은 불량품 배출 장치가 선별한 물품을 단순히 수거하는 용기에 불과하며, 생산 라인에 고정된 상태로 사용될 뿐 별도의 가동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 비록 불량품 배출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해당 장치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또한 용기 형태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해당 장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제8479.9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 호 분류를 배제하였다.

2) 제7326호(철강제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이 특정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 제7326호는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철강제품을 포괄하는 잔여 호이다.
- 쟁점물품은 주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인 철강제품으로, CBP는 쟁점물품이 제7326호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7326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제조 라인에서 선별된 불량품을 수거하는 용기가 선별 장치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쟁점물품은 불량품을 내부로 투입하여 수납하기 위한 공간을 갖춘 수거함으로 기계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선별 장치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용기로 대체도 가능하므로 선별 장치의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는 특정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의 기능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다른 물품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품목정보

품 명	스마트폰 케이스(Smartphone case)
판정번호	NY N360978
판정일자	2026-05-12
신청국가	미국
HTSUS	3926.90.9989
제품설명	• 대상물품: 굽힘 및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케이스 • 형태: 스마트폰 외부 표면을 감싸는 탈착식 쉘(shell) 구조 • 특징: 수납 공간이나 칸막이, 잠금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단순 보호 케이스 • 재질 ① 케이스 본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플라스틱 ② 후면 패널: 아라미드 섬유와 수지의 복합소재
참고 사진	 *사진 출처: Spigen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스마트폰 보호용 케이스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3926호: 플라스틱 제품
 - 제4202호: 케이스·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3) 관련 규정

1) 제4202호 해설

-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7326호)

2) 제3926호 해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

(4) 분석 및 판정

1) 제4202호(케이스·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전용 케이스로, 기기 외부를 감싸 표면 긁힘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본체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후면 패널에는 아라미드 섬유와 수지의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높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끼워 고정하는 스냅 온(snap-on) 방식으로 설계되어 장착 및 탈착이 간편하다.
- 제4202호는 케이스·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는 호이다. 다만 동 호 해설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납하기 위한 형태로 특별히 성형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에 별도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케이스 등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대표적인 예로 제3926호의 플라스틱 제품과 제7326호의 철강제품이 있다.
- CBP는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4202호 분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물품이 스마트폰 외의 물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수납 공간이나 칸막이 등을 갖추지 않은 단순 보호용 케이스는 제4202호에서 규정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형상에 맞추어 제작된 탈착식 케이스로, 스마트폰 외의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나 추가적인 수납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CBP는 스마트폰을 감싸 보호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쟁점물품이 제4202호의 케이스·가방과 유사한 용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4202호 분류를 배제하였다.

2) 제3926호(플라스틱 제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이 제4202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쟁점물품의 본체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후면 패널에는 강도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합성섬유의 일종인 아라미드 섬유와 수지로 구성된 복합소재가 적용되었다.
- 제3926호는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을 포괄하는 잔여 호로,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을 주재질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로서 제3926호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 케이스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는 단순히 기기 외부를 감싸 보호하는 형태부터, 신용카드·신분증 등을 휴대할 수 있는 지갑 기능이 결합된 형태까지 다양한 구조로 제작된다.
- CBP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나 칸막이를 갖추지 않은 보호용 케이스는 제4202호의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재질에 따라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로 분류하였다.
- 반면, 카드 수납용 포켓 등 별도의 수납 공간을 갖추어 형태와 기능 면에서 지갑과 유사한 물품은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다.
- 동일한 명칭의 스마트폰 케이스라 하더라도 형태와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수납 기능의 존재 여부가 제420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1) 품목정보

품 명	에어컨 피팅(Air conditioning fittings)
판정번호	NY N361284
판정일자	2026-05-21
신청국가	미국
HTSUS	8415.90.8045
제품설명	• 대상물품: 차량 내부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부품 • 구조: 차량 내부의 설치 공간에 맞추어 특정 형태로 제작된 파이프와, 에어컨 구성 부품에 연결되는 피팅으로 구성 • 기능: 에어컨 시스템의 응축기, 압축기 및 증발기 사이를 연결하여 냉매의 흐름을 전달 • 피팅 재질: 알루미늄

(2) 쟁점사항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냉매의 흐름을 전달하는 에어컨 피팅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7608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 제7609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 제8415호: 공기조절기

(3) 관련 규정

1) 제7608호 해설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

2) 제84류 주2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3) 제8415호 해설(부분품)

-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7609호(알루미늄 관 연결구류)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파이프와 알루미늄 재질의 피팅으로 구성된 부품으로,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냉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알루미늄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제760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7609호에는 커플링·엘보·슬리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물품은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파이프를 다른 장치에

연결하거나, 파이프의 틈을 메우는 데 사용된다.

- 쟁점물품에는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결합하기 위한 피팅이 부착되어 있어 연결구류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냉매를 전달하기 위한 파이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알루미늄 관은 제7608호에, 알루미늄제 관 연결구류는 제7609호에 각각 분류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파이프는 차량 내부의 설치 공간에 맞도록 특정 형상으로 굽힘 가공되어 있어, 단순한 알루미늄 관과 구별되는 식별 가능한 특정 물품(specific identifiable article)에 해당한다. 또한 피팅 역시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부품에만 연결되는 전용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제7609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관 연결구류와는 구별된다.
- CBP는 유사한 구조의 에어컨 호스 조립체에 대하여, 호스나 연결구류가 아닌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5호(공기조절기)로 분류한 선례(HQ 956700)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이 제7608호의 알루미늄 관이나 제7609호의 알루미늄 관 연결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제8415호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다.

2) 제8415호(공기조절기) 분류 여부 판단

- 제8415호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차량 내부의 공기를 조절하는 차량용 에어컨도 이에 포함된다.
- 제16부 주2 가목에 따르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CBP는 쟁점물품이 차량 내부의 설치 공간에 맞추어 특정한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응축기·압축기·증발기 등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에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기조절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5.9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이프와 피팅이 결합된 부품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알루미늄 재질의 관 연결구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BP는 쟁점물품이 차량 내부의 설치 공간에 맞추어 특정한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고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에만 연결되도록 설계된 피팅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의 전용 부분품으로 판단하였다.
- 유체가 이동하는 통로인 파이프는 차량·선박·건물 등 공기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기기에 널리 사용된다. 다만 특정 기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도록 맞춤형 형상과 전용 연결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통상의 관이나 관 연결구류로 분류하기보다 해당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대체육(Imitation meat products)
판정번호	NY N361152
판정일자	2026-05-20
신청국가	영국
HTSUS	2106.90.9995
제품설명	• 대상물품: 동물에서 얻은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원료를 이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 • 형태: 필렛(fillet) 및 커틀렛(cutlet) 형태 • 제품성분 ① 필렛: 마이코프로틴(육류 대체 단백질) 페이스트 약 89%, 수분 6%, 천연 향신료 3%, 계란 흰자 분말 2% ② 커틀렛: 마이코프로틴 페이스트 약 41%, 페스토·모차렐라 소스 24%, 빵가루 13%, 수분 8%, 유채씨유 7%, 반죽 5% 등 • 수입형태: 냉동 상태로 소매용 포장되어 수입

(2) 쟁점사항

- 동물성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한 대체육 식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2106호: 기타 조제식료품
 - 제1602호: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류

(3) 관련 규정

1) 제2106호 해설

-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2) 제16류 주2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분석 및 판정

1) 대체육 식품의 품목분류

- 쟁점물품은 실제 육류가 아닌 대체 단백질 재료를 사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으로, 필렛과 커틀렛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은 성분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마이코프로틴(mycoprotein)을 주성분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쟁점물품은 240~275그램 단위로 소매용 포장된 상태로 냉동 수입된다.
- 마이코프로틴은 버섯과 같은 균류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는 섬유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육류 대체 원료로 적합하다. 그 밖의 성분으로는 수분·향신료·식물성 오일·빵가루 등이 포함된다.
- CBP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2106호(기타 조제 식료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2106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각종 조제 식료품을 포괄하는 잔여 호로, 동 호 해설에서는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가공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조제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BP는 쟁점물품이 주 성분인 마이코프로틴에 수분·향신료·식물성 오일·빵가루 등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소매용 냉동 식품으로서,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호로 분류하였다.

2) 육류 식품의 품목분류

- 동물에서 얻은 육류는 신선·냉장·냉동 상태이거나 저장을 위한 단순한 처리만 거친 경우 제02류에 분류된다. 이 범위를 넘어 가공된 육류 조제품은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 등의 조제품)에 분류되며, 이 경우 육류 등의 함량이 조제품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6류에서 육류 조제품은 제1601호부터 제1603호에 분류되며, 소시지·파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만 육류 조제품이라 하더라도 육류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 등은 제19류에 분류되며, 소스·혼합 조미료, 수프·브로드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은 등은 제21류에 각각 분류된다.
- 한편, 쟁점물품은 육류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한 대체 식품일 뿐, 실제 육류를 원료로 사용한 조제품이 아니므로, 제02류 및 제16류에서 규정하는 육류 및 육류 조제품의 분류체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결론

- 본 사례는 대체육 식품의 품목분류를 다루고 있다. 육류는 가공 정도에 따라 제02류(육류) 또는 제16류(육류 등 조제품)에 분류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실제 육류가 아닌 대체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식품으로서 이러한 분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는 대체육 식품을 별도로 규정한 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류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대체 원료 자체가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과 가공 정도에 따라 그 원료가 분류되는 호가 적용될 수 있다.
- 결국 대체육 식품은 별도의 분류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품목분류 체계 내에서 다른 식료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1) 품목정보

품 명	니켈 합금(니켈-티타늄) 와이어(Nickel-titanium wire)
판정번호	NY N360963
판정일자	2026-05-05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미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니켈-티타늄 합금 재료의 와이어로 의료기기 및 수술용 임플란트에 사용 • 수입형태: 스푼(spool)에 감긴 상태로 수입

(2) 쟁점사항

- 미국에서 제조된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 로드(wire rod)를 인도로 수출한 후 추가 공정을 통해 최종 사이즈(직경)의 와이어로 가공한 경우, 비특혜원산지 결정방법

(3) 제조 공정

1) 와이어 로드 제조(미국)

- 니켈-티타늄 합금을 용해·주조하여 잉곳(ingot: 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덩어리) 제조
- 잉곳을 열간 단조하여 빌렛(billet: 막대 형태의 중간재)으로 가공
- 빌렛을 열간 압연하여 직경 0.25인치의 와이어 로드(wire rod) 제조
- 직경 0.25인치의 와이어 로드를 냉간 인발하여 직경 0.118인치의 와이어 로드로 가공
- 가공된 와이어 로드를 인도로 수출

2) 최종제품 제조(인도)

- 직경 0.118인치의 와이어 로드에서 추가 냉간 인발 공정을 수행하여 직경 0.040 ~ 0.001인치 규격의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 제조
- 완성된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를 스푼에 감아 포장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의료기기 및 수술용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니켈-티타늄 합금 재료의 와이어로, 미국과 인도에서 수행된 일련의 공정(용해·주조·단조·압연·인발)을 거쳐 제조된다.
- 제품의 제조 공정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킨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
- 실질적 변형 여부는 가공을 거친 물품이 가공 이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미국에서는 니켈-티타늄 합금을 용해·주조하여 잉곳을 제조한 후, 열간 단조·압연 및 냉간 인발 공정을 거쳐 직경 0.118인치의 와이어 로드를 생산하였다. 이후 인도에서는 추가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직경을 0.040인치부터 0.001인치까지 축소하여 최종 제품인 와이어를 제조하였다.
- CBP는 인도에서 수행된 추가적인 인발 공정이 미국산 와이어 로드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사건에서 법원은 와이어 로드를 와이어로 인발하는 공정은 용도나 특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명칭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CBP는 쟁점물품도 상기 판례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냉간 인발 공정이 와이어의 직경을 축소하는 데 그칠 뿐 새로운 명칭·특성·용도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최종제품(와이어)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인도에서 수행된 추가 냉간 인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쟁점물품인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의 비특혜원산지는 와이어 로드의 제조가 이루어진 미국으로 결정되었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이미 최종제품인 와이어의 형상을 갖춘 와이어 로드에 대하여 추가적인 냉간 인발 공정을 수행하여 직경을 축소한 경우, 해당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비특혜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가공 전후의 물품은 모두 와이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용도와 특성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명칭 역시 와이어 로드에서 와이어로의 변경에 그쳐 새로운 물품이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본 사례는 금속 제품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 단순한 직경 축소나 길이 연장과 같은 추가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금속 가공 제품의 원산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튜브 조립체(Tube assembly)
판정번호	NY N361172
판정일자	2026-05-18
신청국가	한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한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차량용 튜브 조립체 • 기능: 촉매 변환기에서 정화된 배기가스를 압력 센서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 수행 • 구조: 특정 형상으로 굽힘 가공된 튜브에 브래킷과 플레어 너트가 결합된 구조

(2) 쟁점사항

- 외국산 파이프 및 플레어 너트와 국내산 브래킷을 조립하여 제조한 차량용 튜브 조립체의 비특혜원산지 결정방법

(3) 제조 공정

1) 부분품 수입 및 조달

- 직선형 파이프(베트남산)와 플레어 너트(중국산)를 한국으로 수입
- 브래킷(한국산)은 국내 조달

2) 완제품 제조 공정(한국)

- ① 부품 조립: 직선형 파이프에 플레어 너트와 브래킷을 삽입·조립
- ② 굽힘 가공: 직선형 파이프를 특정 형상으로 굽힘 가공
- ③ 누설 시험: 파이프의 기밀성 확인
- ④ 건조 및 최종 검사
- ⑤ 포장 및 출하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비특혜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재료의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가공 또는 재료의 투입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서로 다른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는 각 부품이 제조 과정에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완성품에 일체적으로 통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결과, 사용된 부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명칭·성질·용도를 가진 물품이 생산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쟁점물품은 차량 내부의 촉매 변환기에서 압력 센서로 배기가스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튜브 조립체로, 직선형 파이프(베트남산), 플레어 너트(중국산), 브래킷(한국산)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조립·확장·굽힘 가공 및 시험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 CBP는 직선형 파이프가 한국에서 수행된 확장 및 굽힘 가공을 통해 특정 형상을 갖춘 식별 가능한 자동차용 부품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플레어 너트와 브래킷도 파이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성된 튜브 조립체의 구성요소로 일체화된다고 보았다. 즉, 모든 개별 부품이 제조 공정을 거쳐 명칭·특성·용도 측면에서 가공 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에 따라 CBP는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이 각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차량용 튜브 조립체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완성품인 자동차용 튜브 조립체의 비특혜원산지는 해당 공정이 수행된 한국으로 결정되었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차량용 튜브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행된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CBP는 두 가지 판단을 제시하였다. 먼저 직선형의 파이프가 차량용 부품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형상으로 가공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플레어 너트와 브래킷은 파이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개별 부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성품의 구성요소로 일체화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조현기 | 연구 2파트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공하은 | 연구 2파트 | 연구원

E-mail: ghe@kctdi.or.kr, Tel: 02-3416-516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